

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제2소분과 회의 결과

1. 회의 개요

- 일시·장소 : 2019. 11. 1(금). 15:00~17:30 / 농특위 회의실
- 참석 인원 : 10명
 - (분과위원) 곽금순 위원장, 김경주 소분과장 외 위원(5명)
 - * 곽금순, 김경주, 김덕술, 윤기선, 허헌중
 - (연구용역 수행기관)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장 외 연구원(2명)
 - (농특위) 농수산식품팀(3명)

2. 주요 내용

- 먹거리 관련 용어 정리 명확화 및 국내외 현행 법령·제도 분석을 통한 먹거리 기본법의 범위(포함되어야 하는 사항)와 운영체계(거버넌스) 제안 필요
- 중간보고회(11.21/수)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되 농특위 내부위원을 토론회 패널로 참석 요청
 - 2소분과 관련 토론 주제 : 먹거리 기본권의 범위 또는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(먹거리 관리 체계, 안전 관리, 공공급식, 친환경 농업 등)

3. 향후 계획

-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(공개 토론회) : 11.21(목) 10시 / aT센터 세계로룸 I,II
- 제3차 분과위원회 : 11.13(수) 14:00~ / 한살림 서울 교육장
 - (보고안건) 소분과 논의 결과 공유 및 중간 보고회 논의 안건
- 제4차 분과위원회 : 12.18 예정
 - (보고안건)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(안), 2019년도 활동실적 및 2020년도 운영계획(안) 상정

□ (연구용역) 먹거리 관련 용어 정리 및 국내외 현행 법령·제도 분석

- (김경주 위원) 먹거리 안전과 생산이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기에 범부처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할 수 있도록 안전, 건강, 생존권 등 1소분과에 논의하고 있는 개념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
- (허헌중 위원) 먹거리 기본권의 정의는 UN의 ‘경제·사회·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’에서 ‘Right to food’로 규정하며 한국은 1990년부터 적용. Food Safe, Food Security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,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국내에서도 기 연구된 자료 참조
- (김경주 위원) 중앙부처의 범국가적 정책이 지자체에서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수행 전담 기관이 있어야 하며 법령에 수행 주체 또는 역할을 정립하고 관련 해외 사례도 포함 되었으면 함
- (윤기선 위원) 지자체에서 먹거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가 필요함. 관련 법률 전체를 검토하기보다는 법률상 부처별 중복과 사각지대를 정리하여,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위해 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안했으면 함
- (김덕술 위원) 각 부처별 상이한 주요 업무와 이슈를 검토하여 조정안 제안하고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대한 부처별 역할을 정리했으면 함
- (허헌중 위원) 정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한 만큼 먹거리 관리 조직화에 대한 사례 분석필요,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국내 법령과 외국의 사례를 연구 조사 참고

□ (중간보고회)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

- 분과 위원들과의 소통과 의견 조율을 위해 내부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고, 토론자는 농특위 위원 또는 분과위원 중 전문가를 추천 받을 것을 제안
- 2소분과 관련 토론 주제 : 먹거리 기본권의 범위 또는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(먹거리 관리 체계, 안전 관리, 공공급식, 친환경 농업 등)
- 1소분과 회의 때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토론회 준비는 용역기관과 사무국이 담당